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 처벌 등〉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59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9
1. ‘알선행위’ 관련 입법례	9
2.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해외 입법례(중국)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동진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4.
3. 회부연월일 : 2024. 10.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 과정에 영업비밀 누설·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경미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여 범죄행위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전략자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8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제2조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행위¹⁾)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3호사목 신설), ②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며(안 제11조제2항 신설), ③ 영업비밀 침해행위(제1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²⁾)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신설하려는 것임(제18조제1항제1호라목 신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바. (생략) <u><신설></u> 4. (생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u> 4. (현행과 같음)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생략) <u><신설></u>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u>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	제18조(벌칙) ① ----- ----- ----- ----- ----- ----- ----- ----- ----- ----- 1. -----

현행	개정안
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다. (생략) <u><신설></u> 2. ~ 3. (생략) ② ~ ⑥ (생략)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u>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최근 영업비밀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의 주요수단으로 핵심인력 유출이 발생³⁾하고 있어, 영업비밀 침해를 전제로 한 이직 알선행위에 대한 대응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⁴⁾

특허청의 영업비밀 실태조사(2022년)⁵⁾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나 대상기관의 내부자나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을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⁶⁾

3)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대응강화 방안 연구」(경찰청 안보수사국, 2022)

- 기술유출범죄는 산업기술 유출시 바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이제는 헤드헌팅을 병자하여 브로커 형태로 핵심인력 자체에 대한 이직 알선을 통해 기술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4) 특허청 영업비밀 실태조사('22년) 주요 내용

- (유출경로) 국내·국외 유출 모두 '중도 퇴직자'에 의한 발생비율이 가장 높음
 - 국내 유출 피해기업 중 39.8%, 해외 유출 피해기업 중 26.9%
- (유출방법)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 스카우트'가 상당수
 - 국내 유출 피해기업 중 20.4%, 해외 유출 피해기업 중 26.9%

5) 특허청 영업비밀 실태조사('23년) 중 관련 내용

- (유출경로) 국내·국외 유출 모두 '내부자'에 유출이 60.8%*로 가장 높음
 - * 퇴직자 42.9% + 재직자 17.9%
- (유출방법)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 스카우트'가 28.6%로 가장 높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를 전제로 한 이직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⁷⁾에 따른 교사죄 또는 방조죄로 처벌하거나, 「직업안정법」에 따라 적법한 등록·허가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임.⁸⁾

게다가 「직업안정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적법한 등록·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어 부정한 목적으로 임직원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추가하고 동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면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의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6) 매일경제, “‘연봉 4배 줄테니 오라’...대범해진 브로커 유혹, 기술유출 비상’, 2023. 6. 5., 머니투데이, ‘최소 21조 산업기술유출 피해...브로커 처벌 근거 미비, 해법은?’, 2023. 3. 8.

7)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 ③ (생략)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8)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이하 생략)

까지 확장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방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⁹⁾(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예정)에서도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안 제11조제2항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존 규정(제11조¹⁰⁾)을 제11조제1항으로 하면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신설하고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 (7.~13. 생략)

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있는데,

개정안 제2조제3호사목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포함되는 경우 현행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도 함께 적용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중국의 경우 ① 타인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유인·방조하여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침해행위로 규정하면서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하여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¹¹⁾ ② 미국, 독일 등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알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대표발의, 2024. 9. 25. 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1) 참고자료 2.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해외 입법례(중국)

[표 2] 개정안과 정진욱의원안 비교

구분	개정안	정진욱의원안
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추가: 현행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영업비밀 침해 소개·알선 등 행위’ 정의 신설: 현행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말함.
손해배상책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부여 ⇒ 손해배상책임 중복 적용: 정의에서 유형 추가로 자동 손해배상책임 적용 +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	손해배상책임 미적용
벌칙	현행 ‘영업비밀 처벌대상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좌동

문 의 처

02)6788-5468

참고 1

‘알선행위’ 관련 입법례

□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한 입법례

법률명	관련 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형사처벌을 규정한 입법례

법률명	관련 규정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약사법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44조, 제50조제1항·제2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되고,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경영자는 아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 (1) 절도, 뇌물, 사기, 협박, 부정접속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2) 전 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행위
- (3)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자 영업비밀 유지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여 취득한 해당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 (4) 타인이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도록 교사, 유인, 방조하여 영업비밀을 취득,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제3자가 영업비밀 권리자의 직원, 전 직원 또는 기타 단체, 개인이 본 조(本條) 제1관(第1款)에 열거한 위법행위를 실시한 것을 명백히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영업비밀) 여전히 취득, 공개, 사용 또는 타인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가치가 있으며 권리자가 비밀유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를 말한다.

제17조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이 부정당경쟁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정당경쟁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영자의 손해배상금액은 권리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실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실제 손실의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경영자가 악의(고의)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정황이 심각한 경우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확정된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에서 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경영자가 침해행위의 정지를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금액을 포함한다.

경영자가 본법 제6조, 제9조의 규정위반 시, 권리자는 피침해로 입은 실제손실이나 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경위에 따라 권리자에게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21조 경영자 그리고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조직이 본 법 제9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를 정지할 것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